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602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별지 사업자등록명의(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라 한다)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평택세무서 2020. 5. 11.자 정정을 원인으로 마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의 취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앞으로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일 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 등 실체법상
어떠한 권리변동이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가 C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경환